

용역입찰공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해양공학연구동 위험유해환경 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 공사감리용역		
계약기간(예정)	착수일로부터 315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113,795,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5.(화) 13: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3.(수) 10:00
개찰일시	2026.09.23.(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계약담당자	최휘런 (070-8028-7030)	과업담당자	유진영 (042-866-3145)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나.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마.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통신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3) [소방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1493, 전기 1494를 모두 보유)**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기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것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업체도 입찰 참가 가능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심사항목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바.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입찰안내

- 가. 본 건은 가격경쟁 후 적격심사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위 ‘나’ 호 단서조항 또는 ‘다’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라. 위 ‘나’, ‘다’ 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자.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신인도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3.5 ~ △4.0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 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간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KRISO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I.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II.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III.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미동의 ()

20

주소 :

상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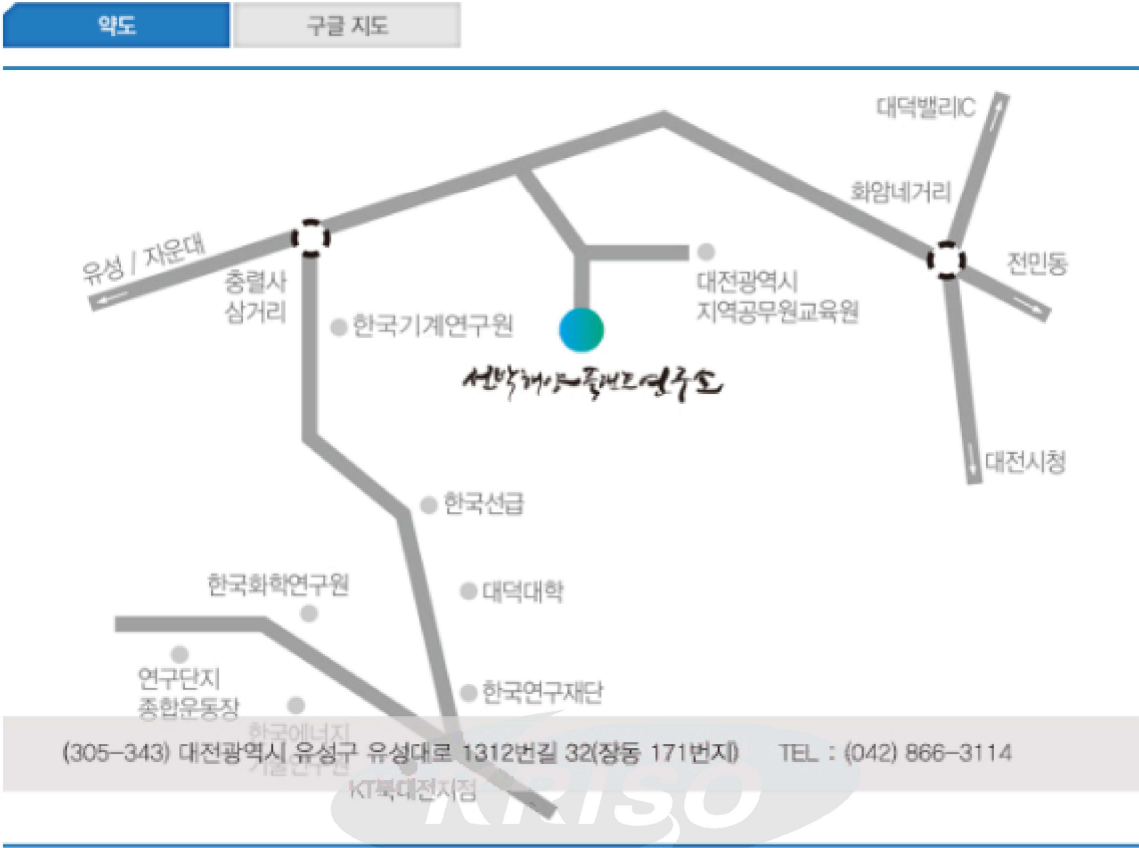
대표자 :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오시는 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 오시는 길 입니다



승용차 이용방법

1.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 진입 후, 첫 번째 북대전 톨게이트로 나옴
2. 톨게이트 나온 직후 좌회전 후, 약 1km 정도 진행하면 화암삼거리 나옴
3. 우회전 후 약 1km 진행하면 신호등 있는 삼거리가 나옴(안내판 확인가능)
4. 좌회전 후 안내판의 안내에 따라 진입로 진입

대중교통 이용방법

- 일반버스 : 704번(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하차), 604번, 911번(한국기계연구원 하차)
- 마을버스 : 1번(한국기계연구원 하차)
- 택시(철도역 기준)
대전역, 서대전역 → 대전엑스포과학공원 → 가정로 → 대덕대학 → 한국기계연구원 → 충렬사 삼거리(우회전) → 1.2km지점 신호등(우회전) → 진입로(정문)